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169호
- 나. 발 의 자 : 김용석 의원 외 9명
- 다. 발의일자 : 2016. 5. 2.
- 라. 회부일자 : 2016. 5. 4.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서울교육행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 기준(미성년 상대 성범죄자나 성적조작 등으로 인한 해임 전력자 등의 공직 배제)을 적용함으로써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서울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위원 위촉 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위원 해촉 사유 중 위촉 제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16. 5. 12~2016. 5. 18).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6년 5월 2일 김용석 의원 외 9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169호로 발의되어 2016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자의 자격요건을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서울교육의 신뢰회복 및 서울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면에서의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¹⁾ 2015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가 전부개정 되어 새로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 현재 동 위원회의 위원은 총 12명으로, 당연직인 공무원 위원이 3명, 민간 위촉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위원의 임기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4항은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2)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는 교육공무원의 채용제한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위사실이 있거나 범죄이력이 있는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동 개정조례안에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교육공무원에 적용되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적용하려는 것은 위원회 구성시 공공의식이 미흡한 인사에 대해 위원회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울교육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적법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의 검토

○ 먼저 적법성 측면에서 현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5항에 따르면 동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등과 같은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바,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12.1.26.>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동 개정조례안에서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조례개정범 위 내에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가 교원의 직무특성상 미성년자인 학생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마련한 교원선발 규정으로 이를 보조금 심의 위촉위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물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신원조회를 민간위원 위촉에 적용하는 것이 다소 과도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증진하여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동 위원회는 법령상의 의무설치위원회로서³⁾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의식이 검증된 인사를 보조금심의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것은 교육청의 청렴도 강화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안건 심의시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건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시행 2015.1.1.]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2015.1.1., 제정]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38호, 2015.12.29., 일부개정]

-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6.1.27.] [법률 제13819호, 2016.1.27., 일부개정]

-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12.1.26.>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